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나201499(본소), 2021나20150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 ·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나201499(본소), 2021나201505(반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8가단12587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익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홍윤

변론 종결 2021. 11. 11.

판결 선고 2021. 12. 2.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8가단125877(본소), 2019가단109988(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7,849,000원, 제1심 공동피고 D은 27,889,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반소

별지1 부동산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과 E가 2017. 2. 13.에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3. 접수 제301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항소심에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본소로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하여, 각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과 E가 2017. 2. 13.에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각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이 사건 반소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이 사건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들,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D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이 사건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가 원고들과 E가 2017. 2. 13.경에 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를라 한다)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기한 관련 사건에서 피고가 E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2017. 2. 16. 또는 관련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1호증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2. 27. 또는 늦어도 피고가 광주지방법원에 E의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2018. 3. 29.경에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E의 사해의사를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선결례의 태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등 참조).

2) 판단의 이유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각 시기에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E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다. 결론

달리 피고가 당시에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해의사를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G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 한다)은 2007. 4. 17.경에 성립하였고, 채무자인 E가 G이 사망한 2016. 12. 30.경망 G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그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E가 원고들과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기 이전에 이미 성립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선결례의 태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의 취지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E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을 포기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피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원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원고들의 다툼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E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지2 부동산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L리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E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

나) 선결례의 태도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며, 수개의 재산처분행위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면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재산처분행위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부동산을 적극재산으로 고려하면 아니 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의 취지 참조).

다) 판단

(1) G이 2016. 12. 30. 사망할 당시에 L리 각 부동산을 D와 공유하거나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E가 그 무렵 원고들과 함께 L리 각 부동산에 관하여도 1/3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L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17. 2. 15. 접수 제856호로 '2016. 12.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G이 1/2 지분을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별로 1/4 지분에 관하여, 망 G이 단독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별로 1/2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다만 위 제2항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E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시점과 L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한 시점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데다가 처분의 상대방 역시 원고들로 동일한 점, ②E의 각 재산처분행위는 G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따른 것으로서 그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 역시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더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할협약과 L리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L리 각 부동산을 적극재산으로 고려하면 아니된다고 판단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에 E가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E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피지 아니한 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원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에 E에게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분할협약이 채권자인 피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선결례의 태도 가)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의 취지 참조).

나)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의 취지 참조).

2) 소결 가)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원고들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원고들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원고들과 E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원고들은 원상회복으로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명한

판사최희동

판사안철범

별지